

국방부령

국 방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청년장병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을 증원하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 군무원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1, 7급2)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비밀기록물 관리담당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에서 6급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홍보원에 뉴미디어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1, 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1명) 및”을 “1명),”으로, “1명”을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한시정원) ①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②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별표 1 총계 “667”을 “669”로 하고, 일반직 계 “659”를 “661”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5”를 “206”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8”을 “159”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2”를 “6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존사) 1”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총계 “668”을 “6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0”을 “662”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06”을 “207”로 하고,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58”을 “159”로 하며,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2”를 “6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기록보존사) 1”를 삭제한다.

별표 3 총계 및 일반직 계 “158”을 각각 “16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20”을 “121”로 하며, 전문경력관 “37”을 “38”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를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로 한다.

별표 7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국방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1. 제2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 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 보	2

2. 제2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6월 3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② (생략) 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 설>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명), ----- ----- -----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 제21조(한시정원) ①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②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67</u>	<u>669</u>	+2
·	·	·	
·	·	·	
일반직 계	<u>659</u>	<u>661</u>	+2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05</u>	<u>206</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 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 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58</u>	<u>159</u>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 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전 문 경 력 관</u> <u>나군(기록보존사)</u> · ·	<u>62</u> · · <u>1</u> · ·	<u>63</u> · · <u><삭 제></u> · ·	+1 -1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68</u>	<u>670</u>	+2
·	·	·	
·	·	·	
일반직 계	<u>660</u>	<u>662</u>	+2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206</u>	<u>207</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보건주사 · 환경주 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 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 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158</u>	<u>159</u>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 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전 문 경 력 관</u> <u>나군(기록보존사)</u> · ·	<u>62</u> · · <u>1</u> · ·	<u>63</u> · · <u><삭 제></u> · ·	+1 -1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2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8</u>	<u>160</u>	+2
일반직 계	<u>158</u>	<u>16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0</u>	<u>121</u>	+1
전문경력관	<u>37</u>	<u>38</u>	+1